

의안번호	제 842 호
의 결 연 월 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일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박진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42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일

발 의 자 : 박진희·이정범·유상용
김성대·김정일·박병천
박봉순 의원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라. 독서문화 진흥 계획수립·시행(안 제4조)
- 마. 추진사업(안 제5조)
- 바. 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안 제6조)
- 사. 실태조사(안 제7조)
-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자. 포상(안 제9조)
- 차. 시행규칙(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붙임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인성시민과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지역서점”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3.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 중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독서문화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독서문화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2. 독서문화 진흥 사업 개발
3. 독서문화 진흥 사업 지원 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및 글쓰기 등 독서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2.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3.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6조(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와 실천 증진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독서문화 진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5조 추진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내 지역서점,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0.>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3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3. 10. 31.>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5., 2023. 10. 31.>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22. 1. 18., 2023. 10. 31.>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
6.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7.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기본 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④ 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12조(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약칭: 출판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9호, 2023. 8. 8., 일부개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 도서관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4. 4. 25.] [법률 제19740호, 2023. 10.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충청북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사업 추진

2.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서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 지역서점 협력 독서문화진흥 사업 추진비

3. 관련조문

- 안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 안 제5조(사업)
- 안 제6조(독서문화 주간 지정·운영)
-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의 운영비·자산취득비의 기준단가로 하며 지역서점 협의체 운영, 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진흥사업 운영시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
(※ 향후 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 진흥 활성화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계
독서문화진흥 사업 (독서·글쓰기, 독서동아리)	14,000	19,600	19,600	33,600	33,600	120,400
지역서점 협의체 운영	2,400	3,200	3,200	5,200	5,200	19,200
합계	16,400	22,800	22,800	38,800	38,800	139,600

○ 독서문화진흥 사업비 (독서, 글쓰기, 독서동아리)

- 2,800천원×운영기관(학교) 수
- 2025년 5기관, 2026년~2027년: 7기관, 2028년~2029년 12기관으로 확대

※ (산출기초) 1기관 2,800천원

- 3월~ 12월(10회)
- 강사수당(일반강사2급) (기본) 120,000원×10회=1,200,000원
(초과) 60,000원×10회=600,000원
- 운영비 100,000원×10회=1,000,000

○ 지역서점 협의체 운영

- 400천원×운영기관(학교) 수
- 13기관(도교육청 1기관, 지역협의체 5~12기관)

※ (산출기초) 1기관 400천원

- 연 2회
- 20,000원×10명×2회=4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세 출	16,400	22,800	22,800	38,800	38,800	139,600
충청북도교육청 지역서점활성화 진흥	16,400	22,800	22,800	38,800	38,800	139,600
재원 조달	16,400	22,800	22,800	38,800	38,800	139,6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6,400	22,800	22,800	38,800	139,6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